

## 약관 변경 수시 공시

1. 대상투자신탁 : Tops 국공채 채권투자신탁 1호  
 Tops 국공채 중기 채권투자신탁 1호  
 Tops 법인용 채권투자신탁 1호  
 Tops 채권투자신탁 CH-1호(법인용)  
 Tops Value 주식투자신탁 1호
2. 변경 내용 :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약관 제 47 조(미수금등의 처리)조항을 제 47 조(미지급금의 처리)조항으로 내용변경

### 3. 변경내용 대비표

현 행	변 경
제 47 조(미수금등의 처리)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시점에 가능한 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. ②자산운용회사는 수탁회사와 협의하여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. 1. 미수금 : 수탁회사의 자금으로 우선충당하고 회수된 미수금은 수탁회사에 귀속시킨다. 2. 미지급금 : 수탁회사가 그 지급일에 지급한다. ③제 2 항제 1 호의 규정에 따라 수탁회사가 미수금을 우선충당하는 경우 우선충당에 따른 손익은 수탁회사에 귀속되며, 우선충당금에 대하여 지급할 이자율 등에 대하여는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.	제 47 조(미지급금의 처리) ①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 105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투자신탁의 미지급금을 지급한다. ②자산운용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지급금 중에서 그 금액이 확정된 경우 다른 투자신탁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4. 변경 시행일 : 2005. 8. 8.

조흥투자신탁운용(주)